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법정 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증감률(%) |
|------------------|------------|-----------|-----------|---------|--------|
| 총 | 계 | 1,173,690 | 1,056,342 | 117,348 | 11.1 |
| 일 | 반 회 계 | 375,136 | 315,533 | 59,603 | 18.9 |
| 특 별 회 계 | 소 계 | 798,554 | 740,809 | 57,745 | 7.8 |
| | 교통사업특별회계 | 25,120 | 25,120 | 0 | 0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55,487 | 45,487 | 10,000 | 22 |
| | 도시개발특별회계 | 717,947 | 670,202 | 47,745 | 7.1 |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 구분 | 사 업 명 | 추 경 | 기 정 | 증 감 | 사 유 | 사업별 설명서 |
|------|------------------------|---------|--------|--------|--|------------|
| | 총 계 | 148,455 | 88,851 | 59,604 | | |
| 계속사업 | 소 계 | 97,505 | 88,851 | 8,654 | | |
| |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 538 | 454 | 84 | ○ 안전사고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예산 추가 필요 | p.1313 |
| |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180 | 0 | 180 | ○ '18.12월 백석역 및 목동 등에서 발생한 노후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기반시설(17종)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에 열수송관을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운영비 필요 | p.1318 |
| |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0 | 200 | -200 | ○ 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던 재난위험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9년 전수 실태조사 후 관리대상 시설물(계측기 설치대상)을 선정하게 됨으로써 2020년부터 사업추진 예정으로, 금년예산 감추경 | p.1325 |
| |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 44,264 | 43,482 | 782 | ○ 지하도상가 하위직(8~9급) 근무자 생활임금 보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필요 | p.1333 |
|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 7,000 | 5,000 | 2,000 | ○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 | p.1337 |

| 구분 | 사업명 | 추경 | 기정 | 증감 | 사유 | 사업별 설명서 |
|------|----------------------------|--------|--------|--------|--|---------|
| | 대한 손실보상 | | | | 및 자치구에서 보상 결정된 토지 매입비,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료 등 향후 집행 예정액이 금년 본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년 집행예산 수준으로 증액 필요 | |
| |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 28,033 | 24,086 | 3,947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반도로 가로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 필요 | p.1409 |
| | 철도건널목(오류1, 향리3) 위탁관리 | 84 | 23 | 61 | ○ 철도(군 전용선) 운행 재개 전 시민안전을 위해 오류1 철도건널목 차단시설 보수 필요 | p.1413 |
|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 17,406 | 15,606 | 1,800 | ○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는 노후 경유차량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연계하여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p.1429 |
| 신규사업 | 소 계 | 50,950 | 0 | 50,950 | | |
|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 150 | 0 | 150 | ○ 당초 지진안전센터 단독 설립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년 2월 재난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500억 이상)가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타당성조사 실시 필요 | p.1322 |
| |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 1,800 | 0 | 1,800 | ○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 올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작성 중으로 우리시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 착수 필요. | p.1329 |
| |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 49,000 | 0 | 49,000 | ○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확보 필요 | p.1341 |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 구분 | 사 업 명 | 추 경 | 기 정 | 증 감 | 사 유 | 사업별 설명서 |
|------|---------------------|--------------------|--------------------|----------------|--|------------|
| 총 계 | | (x3,212) 53,667 | (x3,212) 43,667 | (x-) 10,000 | | |
| 계속사업 |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확장 | (x3,212) 53,667 | (x3,212) 43,667 | (x-) 10,000 | ○ 2020년 12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전구간 동시 개통을 위해 올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공사물량에 대한 공사비 증가액 및 상계주공1~3단지, 창동주공 17~19단지 방음벽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필요 | p.1404 |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사 업 명 | 추 경 | 기 정 | 증 감 | 사 유 | 사업별 설명서 |
|------|----------------------------|---------|---------|--------|--|------------|
| 총 계 | | 225,898 | 178,153 | 47,745 | | |
| 계속사업 | 소 계 | 223,418 | 178,153 | 45,265 | | |
|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 57,000 | 53,000 | 4,000 | ○ 금년 말까지 금하지하차도 및 염곡동서지하차도 개통을 하기 위한 추가예산 필요 | p.1345 |
| | 강변북로 서강대교 복단방향 접근성 개선방안 조사 | 0 | 100 | -100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조사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감추경 필요 | p.1349 |

| 구분 | 사 업 명 | 추 경 | 기 정 | 증 감 | 사 유 | 사업별 설명서 |
|----|--------------------------------------|--------|--------|--------|---|------------|
| | 동부간선도로(월계1교~ 녹천교)확장 | 11,200 | 10,200 |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12월 동부간선도로 확장 전구간 동시개통을 위한 관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추진할 공사물량에 대한 증가액 확보 필요 ○ 보상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따라 증가 예상되는 보상 및 수수료 확보 필요 | p.1352 |
| | 율곡로(창경궁 앞) 구조개선 | 10,880 | 7,440 | 3,4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내 율곡로 도로 개통을 위한 공사비 추가확보 필요 | p.1357 |
| |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12,636 | 2,336 | 10,3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금년 6월 수용재결 결정이 예상되며, 수용재결 결정 후 토지사용개시일(통상 6주 이내)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해야하므로 보상금 103억원 추가 확보 필요 | p.1362 |
| | 성북동길 확장 | 2,500 | 0 | 2,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018년 사업구간의 감정평가 결과 반영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 필요 ○ 2016-2017년 사업구간의 착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공사비 반영 필요 | p.1368 |
| | 금호로 확장 | 12,100 | 6,100 | 6,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액 필요(40억원) ○ 금년내 공사 준공을 위한 공사비 추가확보 필요(20억원) | p.1372 |
| | 교차로 구조개선 | 600 | 1,200 | -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진구 구의사거리 구조개선 공사 미시행 통보에 따른 공사비(6억원) 감액 필요 | p.1380 |
| | 방학로(신동아 사거리~우이동광장) 도로확장 | 1,000 | 0 |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로 보도 확보 및 도로선형 개선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 | p.1384 |
| |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 150 | 100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저촉건물의 부분철거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비 필요 | p.1388 |
| | 행당교 신설 및 중랑천횡단 보행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 200 | 300 |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형식 및 규모의 교량형식 선정으로 용역비 1억원 절감하여 감액 요청 | p.1392 |
| | 살곶이길~천호대로간 횡단연결로(보행교) 설치 타당성조사 | 0 | 100 |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조사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감추경 필요 | p.1396 |
| | 벗꽃로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200 | 300 |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차액 발생 및 기본계획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감추경 | p.1399 |
| | 노후포장도로 정비 | 73,644 | 72,994 | 6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면표시 도색상태 전수조사 및 연차별 | p.1419 |

| 구분 | 사업명 | 추경 | 기정 | 증감 | 사유 | 사업별 설명서 |
|----|------------------------------|--------|-------|-------|---|------------|
| | | | | |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추가확보 | |
| |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 6,461 | 5,238 | 1,223 |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예산 추가확보 필요 ※ 추가예산 미확보시 준공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단 및 간접비 등의 실비 발생 우려 | p.1423 |
|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 6,900 | 5,500 | 1,400 | ○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위험시설(안전등급 D등급)로 지정되어 철거된 보도육교 재설치 요청으로 인한 설치사업비 추가확보 필요 | p.1438 |
| | 불광천복개 1구간 보수 | 500 | 0 | 500 | ○ 정밀안전진단 결과('18.11월 준공) 지적사항을 반영한 시설물 적기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p.1444 |
| |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 10,680 | 3,750 | 6,930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인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 p.1449 |
| | 올림픽대로 노후 조명시설 개선 | 3,122 | 1,800 | 1,322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인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 p.1455 |
| | 정릉·홍지문터널 노후 조명시설 개선 | 3,286 | 2,618 | 668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인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 p.1460 |
| | 마포대교 보수공사 | 1,080 | 1,000 | 80 | ○ 마포대교 투신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 추가 설치 비용 | p.1465 |
| | 노후 점검시설 개선을 통한 한강대교 역사체험길 조성 | 0 | 177 | -177 | ○ 백년다리(한강대교)보행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역사체험길 조성 공사가 불가하여 공사비 전액 감추경 | p.1469 |
| | 한강대교 보수공사 | 280 | 0 | 280 | ○ 백년다리(한강대교) 보행교 개통('21. 6월) 전 신속한 한강대교 종합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확보 필요 | p.1472 |

| 구분 | 사업명 | 추경 | 기정 | 증감 | 사유 | 사업별 설명서 |
|------|-------------------------|-------|-------|-------|---|---------|
| | 한강교량 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 399 | 0 | 399 | ○ 마포대교 자살방지 난간 효과에 따른 타 한강교량(8개소)으로의 확대설치 비용 | p.1476 |
| | 영등포역고가 보수공사 | 1,750 | 1,400 | 350 | ○ 미끄럼방지포장(그루빙) 설치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 | p.1479 |
| |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 5,650 | 2,500 | 3,150 | ○ '19년 가교설치 완료를 통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 공사비 필요 | p.1482 |
| | 서소문고가 보수공사 | 1,200 | 0 | 1,200 | ○ 서소문고가 콘크리트 박락 관련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공사비 확보 필요 | p.1487 |
| 신규사업 | 소 계 | 2,480 | 0 | 2,480 | | |
| |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 700 | 0 | 700 |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일정에 맞추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확보 필요 | p.1376 |
| |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 1,780 | 0 | 1,780 | ○ 도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일환인 자동차전용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위해 소요예산 확보 필요 | p.1433 |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801억 24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18.9% 증가한 3,751억 36백만원임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출 : 기정예산과 동일(251억 2천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39억 57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554억 87백만원임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1,842억 86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한 7,179억 47백만원임

-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 증가한 38조 6,796억 1천만원(총계규모)으로 ‘대기질 개선’, ‘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시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중점 편성되었음.
- 이 중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1,173억 48백만원) 증가한 1조 1,736억 9천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9% 증가한 3,751억 36백만원임.
- 교통사업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며,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554억 87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7.1% 증가한 7,179억 47백만원임.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1)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사업별설명서 p.1332)

- 동 사업은 서울시 지진/복합재난 관련 연구, 정책발굴, 교육 등 전담기구 설립의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을 위해 금회 신규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150,000 | (x-) 0 | (x-) 150,000 | |
| 사 무 관 리 비 | (x-) 150,000 | (x-) 0 | (x-) 150,000 | ○ 타당성조사 용역(1식) = 150,000,000 |

- 서울시는 지진안전센터가 시민안전체험관과 연계설계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1)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금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설명임.

1) 제37조(투자심사)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 지진안전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이미 '18.11월부터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과업변경을 통해 용역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지진안전센터와 안전체험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19.6.25일 준공 예정임.

용역 개요

- 용역명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 사업기간 : '18.11.27~'19.5.26(6개월간)
- 사업예산 : 60,000천원
- 주요 검토항목
 - 지진안전센터 설립 필요성 검토 ... 지진대비 시민의식 현황 / 해외 지진방재 선진도시 현황 등
 - 지진안전센터 기본방향 분석 ... 센터 기능·역할 / 입지조건 및 규모 / 운영방식 검토 등
 - 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대효과 분석 ... 시민 방재의식, 지역주민 복리증진 등에 미치는 영향 등
 -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설립 실행계획 ... 지진방재교육 체계 / 센터 설립 로드맵 제시

< 계약변경(과업변경) 사항 >

- ◇ 사업비 : 74,000천원 (14,000천원 증액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개발비)
- ◇ 사업기간 : '18.11.27~'19.6.25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연장)
- ◇ 주요 추가과업
 - 타당성 검토의 대상의 변경
 - (기존) '지진안전센터' → (변경)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 (※센터 명칭 제안)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적정 건물규모 및 투자금액 검토
 - 체험시설, 전시관 등 내부시설 상세 제시(중·평면상 배치도 포함)
 - 총 사업비 제시 :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등
 - 연차별 운영예산 내역 산출 :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비용편익 분석 등
 - '지진안전센터+재난안전체험관'의 운영방안(직접 vs. 위탁) 검토

- 따라서 아직 사전 검토용역이 진행 중으로 지진안전센터와 안전체험관의 연계 방안 등 사업타당성 여부가 확실히 마무

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워 다소 서두르고 있다 판단되며,

- 이는 예산담당관에 추정수요 요청(추경사업별 설명서 제출, '19.4.15.) 시에도 방침서(상황대응과-7303, '19.5.21.)가 마련되지 않았던 상태로 성급하게 예산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에 기인함.
- 뿐만 아니라 지진안전센터의 위치로 전제하고 있는 '소방행정타운 내 소방재난본부 이전(移轉)부지'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는 상태로 상황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사업별설명서 p.1329)

- 동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위한 것으로 금회 18억원을 신규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1,800,000 | (x-) 0 | (x-) 1,800,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x-) 1,800,000 | (x-) 0 | (x-) 1,800,000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 지원 (280,000원*25,915개소)/2/2-(14,050,000) =1,800,000천원 |

- ‘18.1.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舊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가 의무화되었으며, 올해 최초로 실태조사가 시행될 예정임.
- 한편, 2019년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방법, 조사단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편성했으나, 국토교통부 세부기준이 금년 7월 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임에 따라
-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25,915동 중 ‘19년 조사대상 12,957동의 조사비용 총 36억원 중 50%(시·구 분담비율 50:50)인 18억원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
- 따라서 노후 건축물 등 안전관리가 시급한 소규모 제3종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됨.

2)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사업별 설명서 p.1341)

- 동 사업은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원금 290억원, 이자 200억원) 확보를 위해 신규로 490억원을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 (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49,000,000 | (x-) 0 | (x-) 49,000,000 | |
| 배상금등 | (x-) 49,000,000 | (x-) 0 | (x-) 49,000,000 | ◦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 49,000,000천원 <hr/> 선순위차입금 29,000,000천원*1식 = 29,000,000천원 <hr/> 지연이자 20,000,000천원*1식 = 20,000,000천원 |

- 민간투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시설인 민간투자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 또는 운영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부의 요청이나 민간의 매수청구요청에 따라 정부가 해당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지급금을 말하며,
-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의 경우 역시 당초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조달하여 지하상가를 개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뒤 약정된 기간(20년) 동안의 운영수입을 가져갈 예정이었으나,
- '11년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후 임대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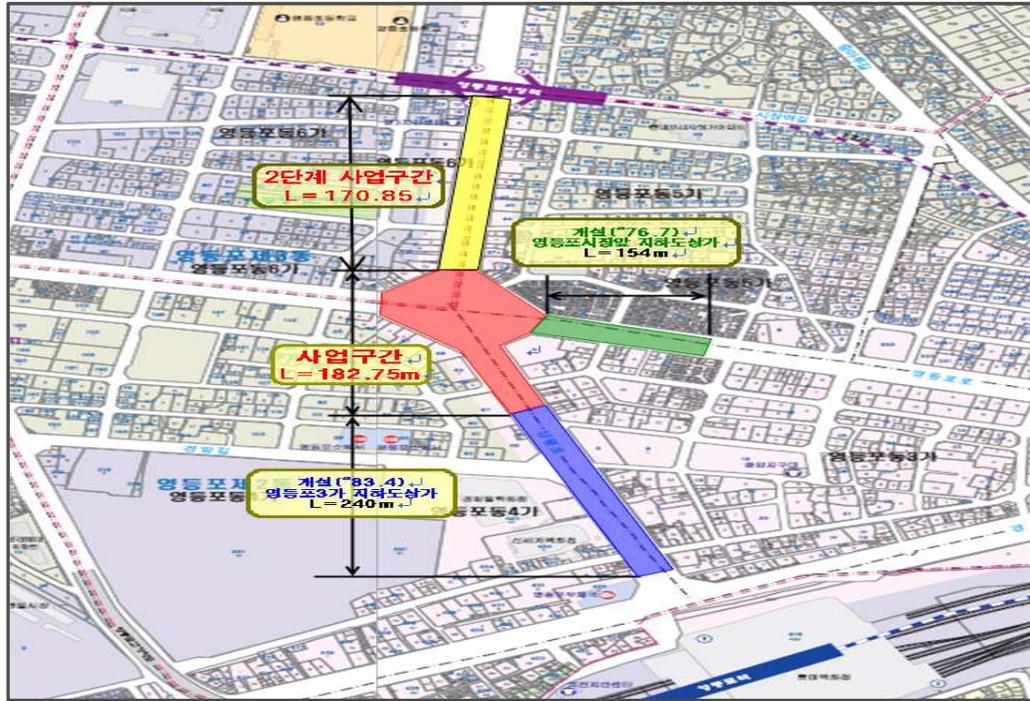
을 추진하였으나 임대분양이 부진하여 사업시행자는 '14.2.5 일과 '16.5.16일 두 차례 기업회생절차³⁾를 신청했으나 기각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해져 채무상환 연체이자만 증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됨.

- 따라서 서울시는 실시협약서에 따른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지급금을 추경편성하여 지급하고 지하상가의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임.
- 먼저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구간인 영등로는 당초 구도(區道)로서 도로관리청인 영등포구청이 '97.10월 「영등포시장 주변 지하공간개발 기본조사용역」 시행, '03.8월 「영등포시장로타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을 거쳐
- '04.4월 「지방재정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영등포시장로타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시행 계획 수립 후 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05.7월 (주)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와 최초 실시협약 체결까지 추진했으나,

■ 사업개요

- 사업명 : 영등포시장로타리일대 지하공간개발
- 위치 : 조흥은행 앞 ~ 영등포시장사거리(1단계) ~ 영등포시장역(2단계)
- 규모 : 폭 18.3~58.3m(광장포함), 연장 462m, 면적 9,791m²
- 시설내용 : 지하보도, 지하도상가, 광장 등 주민휴식공간
- 사업비 : 민간자본유치(지방재정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년(사업신청자에 의해 변동 가능)

3)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기업에 대해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그림] 사업구간 위치도

- '06.1월 영중로가 특별시도로 인정공고(도로계획과-697, '06.1.26.)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서울시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서울시는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여하고
- '07.7월 해당 시설물은 준공 시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되 영등포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상 제반 사무를 처리토록 하는 한편, 사업구간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1단계 구간(조흥은행 앞~영등포시장사거리)만으로 축소하는 골자의 “부속계약”을 체결하였음.
- '07.10월 영등포구청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착공하여 '11.6월 완료하였으나 영등포구청 또는 서울시와 합의 없이 임의로 자본구조 변경과 자금재조달([표] 참조)을 시행한 상태여서 영등포구청과 서울시는 자금재조

달에 따른 공유이익을 검토하여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준공을 연기한 채 같은 해 10월 임시사용을 승인하였음.

[표] 자본구조 및 재원조달액

| 구 분 | | 협약('05.7) | 사업시행자 임의 변경 | 비 고 |
|-------------------|---------------|-------------|----------------|-----------------------|
| 자본금 (백만원) | 출자자(소계) | 20,000 | 3,000 | 결손금(26.3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임 |
| | 박재성 | - | 2,500 | |
| | (주)현우개발 | 16,080 | 500 | |
| | (주)명성라이픽스 | 980 | - | |
| | (주)통광건설 | 980 | - | |
| | (주)제일Eng | 980 | - | |
| | (주)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 980 | - | |
| 타인 자본 (백만원) | 소 계 | 34,828 | 38,294 | |
| | 선순위 | 34,828(10%) | 29,000(변동) | 약정(29,000) |
| | 후순위 | - | 9,294(3.5%) | 약정(12,000) |
| 임대보증금(백만원) | | 7,961 | 22,124 | |
| 총 재원조달액 | | 62,789 | 63,418 | |

○ 그 후 사업시행자는 임대분양이 부진해 두 차례('14.2.5., '16.5.16.)에 걸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되고, 사업시행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을 인지한 서울시는 '14.2월 사업시행자의 최초 기업회생신청 이후 실시협약 제 50조⁴⁾에 따라 제3의 대체사업자 지정 검토, 협약해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4) 제50조 (협약의 중도해지)

① 협약당사자는 협약 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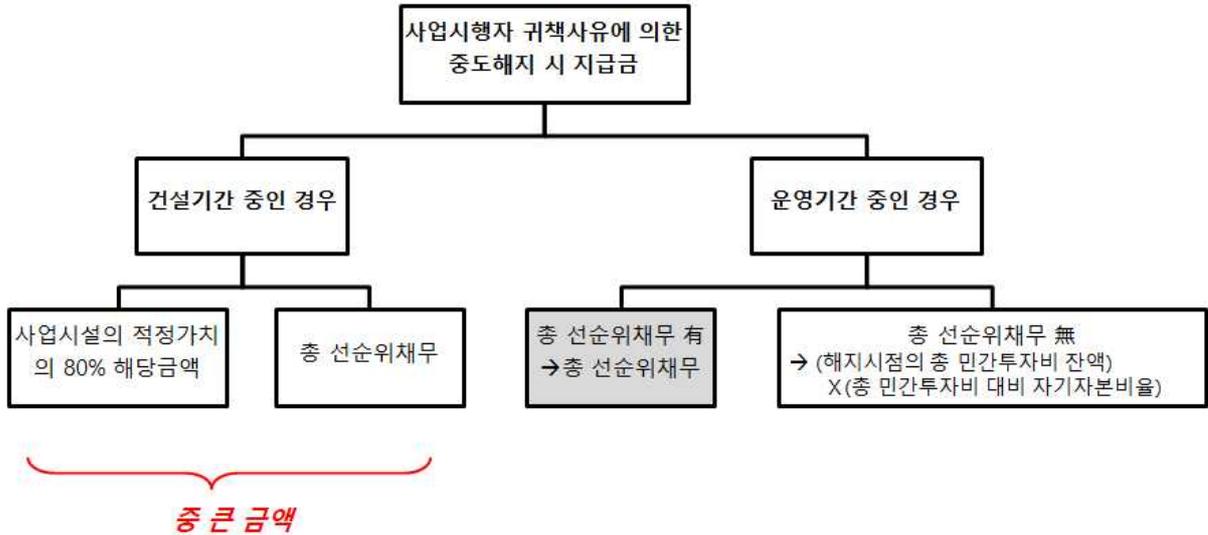
- 서울시, 상인, 대주단 모두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협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지하상가를 건설 중인 때 (1,070억원(사업시행자 귀책사유), 1337억원(영등포구청 귀책사유): 서울시 추산)보다 운영 중인 상태의 해지시지급금(450억원: 서울시 추산)이 낮을 것이라는 법률자문에 따라 '15.3.26일 공사를 준공처리하기에 이룸.
- 협약 해지와 관련해 실시협약서 제51조 및 [부록 7]5)에 따라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 적정가치⁶⁾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운영기간 중인 경우는 '총 선순위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때는 총선순위 채무', '총 선순위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는 해지시점의 총 민간투자비 잔액에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그림] 참조).

5) 가.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지급금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은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총선순위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때에는 총선순위채무, 총선순위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지시점의 총민간투자비 잔액(총민간투자비를 정액으로 상각한 후 잔액)에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다만, 이 경우 실제 지급되는 지급금은 준공일 이후 지급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6) 건설기간중에 있어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산정은 중도해지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 민간투자비와 동 금액에 해지시점까지 경상수익률을 해당기간만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경상수익률은 사업수익율에 해지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산



[그림] 실시협약에 따른 중도해지 시 지급금 산정

- 사업 준공 이후 ‘15.8월 서울시는 상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주단에 대체사업자 검토를 요청했으나, 대체사업자 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 ‘17.7월부터는 상인조합이 무상사용 잔여기간 동안 상가 운영의사를 밝혔으나, 대주단 등의 차입금액에 대한 처리계획이 없어 상인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8.3월부터 현재까지 대주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해지시 지급금 규모 축소(평균연체이자 12.7%→2.26%)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대주단과의 협의 결과**(‘18.3~현재)

- 1차 이자 조정 : 연체이자 약12.7% → 정상이자 5.7%
- 2차 이자 조정 : 정상이자 5.7% → 협의 이자 3%
- ※ 대주단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하는 금리 : 2.64%
- 3차 이자 조정 : 협의 이자 3% → 서울시 지방채 이자 2.26%

- 결과적으로 ‘19.8월말 기준 해지시 지급금은 원금 290억원에 이자 200억원([표] 참조)으로 총 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됨.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이자계산근거)

기준일 : 2019.07.31
(단위 : 원)

| 대출과목 | ①대출잔액 (원금) | 이 자 계 산 근 기 | | | 일수 | 이율 | ②이자금액 | 원리금 합계 |
|----------|-----------------------|----------------|------------|------------|-----|---------|-----------------------|-----------------------|
| | | 대상원금 | 기간 | | | | | |
| | | | 부터 | 까지 | | | | |
| 일반운전대 | 29,000,000,000 | 29,000,000,000 | 2014-01-28 | 2014-03-04 | 36 | 6.350% | 181,627,397 | 기준이율 6.35% |
| | | 29,000,000,000 | 2014-03-05 | 2014-03-31 | 27 | 13.350% | 286,384,931 | 기준이율 6.35% + 연체이자 7% |
| | | 29,000,000,000 | 2014-04-01 | 2014-05-31 | 61 | 14.350% | 695,483,561 | 기준이율 6.35%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4-06-01 | 2014-09-27 | 119 | 15.350% | 1,451,310,958 | 기준이율 6.35% + 연체이자 9% |
| | | 29,000,000,000 | 2014-09-28 | 2014-12-27 | 91 | 15.050% | 1,088,135,616 | 기준이율 6.05% + 연체이자 9% |
| | | 29,000,000,000 | 2014-12-28 | 2015-03-18 | 81 | 14.830% | 954,401,917 | 기준이율 5.83% + 연체이자 9% |
| | | 29,000,000,000 | 2015-03-19 | 2015-03-23 | 5 | 14.570% | 57,880,821 | 기준이율 5.57% + 연체이자 9% |
| | | 29,000,000,000 | 2015-03-24 | 2015-06-18 | 87 | 13.570% | 938,003,013 | 기준이율 5.57%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5-06-19 | 2015-09-18 | 92 | 13.350% | 975,830,136 | 기준이율 5.35%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5-09-19 | 2015-12-18 | 91 | 13.300% | 961,608,219 | 기준이율 5.30%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5-12-19 | 2015-12-31 | 13 | 13.370% | 138,095,616 | 기준이율 5.37%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6-01-01 | 2016-03-18 | 78 | 13.370% | 826,309,836 | 기준이율 5.37%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6-03-19 | 2016-06-18 | 92 | 13.330% | 971,706,010 | 기준이율 5.33%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6-06-19 | 2016-09-18 | 92 | 13.090% | 954,210,928 | 기준이율 5.09%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6-09-19 | 2016-12-18 | 91 | 13.040% | 940,233,879 | 기준이율 5.04%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6-12-19 | 2016-12-31 | 13 | 13.240% | 136,379,234 | 기준이율 5.24%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7-01-01 | 2017-03-18 | 77 | 13.240% | 809,997,808 | 기준이율 5.24%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7-03-19 | 2017-06-18 | 92 | 13.180% | 963,403,835 | 기준이율 5.18%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7-06-19 | 2017-09-18 | 92 | 13.080% | 956,094,246 | 기준이율 5.08%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7-09-19 | 2017-12-18 | 91 | 13.080% | 945,701,917 | 기준이율 5.08%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7-12-19 | 2018-03-18 | 90 | 13.360% | 955,331,506 | 기준이율 5.36%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8-03-19 | 2018-04-26 | 39 | 13.350% | 413,667,123 | 기준이율 5.35% + 연체이자 8% |
| | | 29,000,000,000 | 2018-04-27 | 2018-06-18 | 53 | 8.350% | 351,615,068 | 기준이율 5.35% + 연체이자 3% |
| | | 29,000,000,000 | 2018-06-19 | 2018-09-18 | 92 | 8.350% | 610,350,684 | 기준이율 5.35% + 연체이자 3% |
| | | 29,000,000,000 | 2018-09-19 | 2018-12-18 | 91 | 8.350% | 603,716,438 | 기준이율 5.35% + 연체이자 3% |
| | | 29,000,000,000 | 2018-12-19 | 2019-03-18 | 90 | 8.600% | 614,958,904 | 기준이율 5.36% + 연체이자 3% |
| | | 29,000,000,000 | 2019-03-19 | 2019-06-18 | 92 | 8.600% | 628,624,657 | 기준이율 5.36% + 연체이자 3% |
| | | 29,000,000,000 | 2019-06-19 | 2019-07-30 | 42 | 8.600% | 286,980,821 | 기준이율 5.36% + 연체이자 3% |
| 계 | 29,000,000,000 | | | | | | 19,698,045,079 | 48,698,045,079 |

| | | | | | | | |
|---------------|-----------------------|-------------------|-------------------|-----------|---------------|--------------------|----------------|
| 월별 증가액 | 29,000,000,000 | 2019-01-01 | 2019-01-31 | 31 | 8.600% | 211,819,178 | 일부 변동가능 |
|---------------|-----------------------|-------------------|-------------------|-----------|---------------|--------------------|----------------|

○ 본 사안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① 현 시점에서 협약당사자의 적정성

- 현재 실시협약서와 부속협약서의 협약당사자는 서류상으로 (주)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와 영등포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06.1월 영등포가 특별시도로 인정공고되면서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청이 서울시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기부채납을 받은 당사자도 서울시가 되었으며,
- '07.7월 부속협약 당시 서울시가 적극 관여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협약당사자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자체 법률자문에 따른 의견임.
- 그러나 협약서 서류상에 명기된 협약당사자는 현재까지 영등포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속협약 당시에 도 서울시가 적극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당사자를 영등포구청장으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에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②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실시협약의 적정성

- 해지시지급금 산정 관련해 2000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기본계획」 상 매수청구 및 협약해지시 지급액 산정기준이 신설되었으며,
- 그 주요골자로는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의 경우 효력발생일 현재의 영업권을 제외한 시설자체의 가

치평가액, 총 민간투자비 평가액, 실시협약상의 미래현금 흐름의 일정비율 등으로 협의하여 정하되 민간자본 유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채무는 보장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본 실시협약의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법과 '03.8월에 실시협약을 맺은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법을 비교([표] 참조)해 보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본 협약서의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법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실시협약서 제51조제2항⁷⁾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여겨짐.

[표] 해지시지급금 관련 협약서 비교

|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05.7, 최초) | 용마터널('03.8, 최초) |
|--|---|
| <p>[부록 7] 해지시 지급금</p> <p>가. 사업시행자 귀책사유</p> <p>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은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총선순위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 <p>제 53 조 (해지시 지급금)</p> <p>① 본 협약이 제51조 제1항(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본 조의 해석에 있어서 관리운영권에 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당권자를 의미함)에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

7) 제51조 (중도해지 시 지급금 산정의 일반원칙)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하여 부록 7을 기준으로 하여 해지 시 지급금을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가치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 | |
|--|--|
| <p>때에는 총선순위채무, 총선순위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지시점의 총민간투자비 잔액(총민간투자비를 정액으로 상각한 후 잔액)에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다만, 이 경우 실제 지급되는 지급금은 준공일 이후 지급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지급한다)</p> | <p>2. <u>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u></p> |
| <p>나. 영등포구청 귀책사유 영등포구청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은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u>운영기간 중인 경우 부록6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 순 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u> | <p>② 본 협약이 제51조 제2항(서울시 귀책사유) 및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u>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u> |

③ 사업계획에 대한 영등포구청과 서울시 대응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당초 민자사업 계획의 예상수입 추정에 대한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협약서 상에 제시된 예상수입 대비 실제수입이 최소 약 10%에서 최대 약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협약서의 예상수입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운영개시 이후 연도별 협약서 예상수입 대비 실제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부속협약서 (A) | 3,374 | 3,509 | 3,649 | 3,795 | 3,947 | 4,105 | 4,269 | 4,440 | 4,617 |
| 실제수입 (B) | 308 | 1,739 | 1,672 | 1,548 | 1,553 | 888 | 761 | 855 | |
| 차이 (B-A) | △3,066 | △1,770 | △1,977 | △2,247 | △2,394 | △3,217 | △3,508 | △3,585 | |

※ 부속협약서 상 운영개시일: 2010.1.1. / 실제 운영개시일: 2011.10.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개시 이후 연도별 협약서 예상운영비 대비 실제운영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은 오히려 예상운영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하여 운영 자체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방증하고 있다 하겠음.

[표] 운영개시 이후 연도별 협약서 예상운영비 대비 실제운영비 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부속협약서 (A) | 3,438 | 3,468 | 3,500 | 3,534 | 3,571 | 3,610 | 3,652 | 3,696 | 3,744 |
| 실제지출 (B) | 2,119 | 5,157 | 3,977 | 3,661 | 3,768 | 3,993 | 3,674 | 3,818 | |
| 차이 (B-A) | △1,319 | 1,689 | 477 | 127 | 197 | 383 | 22 | 122 | |

- 이러한 문제는 민자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책임졌던 영등포구청이 사업의 추진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당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도 지금의 사태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음.

○ 다음으로, 현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다음 3가지 예상 시나리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임.

① 해지시지급금 지급 후 즉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 금회 추경편성의 방향과 동일하며, 현재로서는 해지시지급금 490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고 기부채납 된 뉴타운지하상가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반환받아 향후 서울시

가 운영하는 방안임.

- 이 경우 서울시가 뉴타운지하상가를 공실로 반환받아야 하는데 현 임차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보증금 등 금전적 문제로 인해 임차인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② 무상사용기한 만료 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지금의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 및 운영실태에 비추어 볼 때 무상사용기한 만료 시(2031년, 20년 운영)까지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시 되며, 만료 전에 대주단으로부터의 법인 청산절차 등 모종의 법적 대응이 있을 수도 있음.
- 다만, 무상사용기한 만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무상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협약 해지 시 사업시행자가 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나,
-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시되며 만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시에 상가명도를 거부하는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③ 현 상태 유지 중에 대주단에 의해 법인 청산하는 경우

- 현 상태를 유지하는 와중에 대주단에서 조속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기한이익상실⁸⁾(EOD, Events of Default)을 선언하고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 이 때 사업시행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파산관재인에 의해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의 연체이자 증가로 인해 해지시지급금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 이 경우 역시 현 임차인의 상가명도 거부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결론적으로 상기의 시나리오 등에 근거할 때, 금회 추정편성을 통한 중도 해지가 법적·재정적·행정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문제와 이해득실을 갖게 되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 뿐만 아니라 임차인 문제도 병행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회 해지시지급금 추정 편성이 현시점에서 최적의 방안인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기한이익상실전까진 '이자'에 대출금리와 연체금리 6~7%를 더해 지연배상금을 산출. 기한이익상실 뒤부터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매겨 산출함

- 참고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지급할 선순위채무 미납 원금 290억원에 대한 월 이자발생액은 약 2억 12백만원(이율 8.6% 적용)으로 서울시는 산정하고 있음.

4)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별설명서 p.1325)

- 동 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예측 및 이력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취약시설에 상시계측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편성했던 기정예산 2억원 전액을 감추경하는 것임.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0 | (x-) 200,000 | (x-) -200,000 | |
| 시설비 | (x-) 0 | (x-) 200,000 | (x-) -200,000 | ◦설치비 : 15,039천원x10개소=150,390천원, 유지관리비 : 49,610천원 <hr/> 200,000천원 |

- 이는 서울시가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8.1.18.)에 따라 올해 실시 예정인 3종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시계측 모니터링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인데,
-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당시 동 사업이 방침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 이처럼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시점에서 목표 대상물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만 가지고 접근할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잦은 사업변경 및 불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음.

(2) 도시개발특별회계

1)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별설명서 p.1419)

- 동 사업은 노후, 균열, 파손 등으로 불량한 포장 또는 포트홀, 소성변형 등의 도로파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노면 표시 도색상태 전수조사 및 연차별 유지보수계획 수립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 6억 5천만원을 증추경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73,644,000 | (x-) 72,994,000 | (x-) 650,000 | |
| 사무관리비 | (x-) 80,000 | (x-) 80,000 | (x-) 0 | |
| 공공운영비 | (x-) 18,000 | (x-) 18,000 | (x-) 0 | |
| 재료비 | (x-) 776,000 | (x-) 776,000 | (x-) 0 | |
| 기타보상금 | (x-) 8,000 | (x-) 8,000 | (x-) 0 | |
| 시설비 | (x-) 71,935,000 | (x-) 71,285,000 | (x-) 650,000 | 노면표시 도색상태 전수조사 및 연차별 유지보수계획 수립 = 650,000,000 |
| 감리비 | (x-) 700,000 | (x-) 700,000 | (x-) 0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x-) 100,000 | (x-) 100,000 | (x-) 0 | |
| 자산및물품취득비 | (x-) 27,000 | (x-) 27,000 | (x-) 0 | |

- 노면표시의 경우 포장체와 그 수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시인성 측면에서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노면표시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연 차별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충분 하다 하겠음.

-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면표시를 포함하는 안전표지 정비에 관한 사업은 도시교통실이 주관부서이고 도로사업소가 예산을 재배정 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 체제로,
- 본 추경편성은 이번 회기에 발의된 동 일부개정조례안 즉, 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 업무를 도시교통실장에서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하는 안⁹⁾이 의회심사를 통과한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안건 심사와 병행하여 검토할 사안이라 사료됨.

2)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사업별설명서 p.1423)

- 동 사업은 노후된 도로사업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전요구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52억 38백만원 대비 12억 23백만원 증가한 64억 61백만을 편성함.

[표]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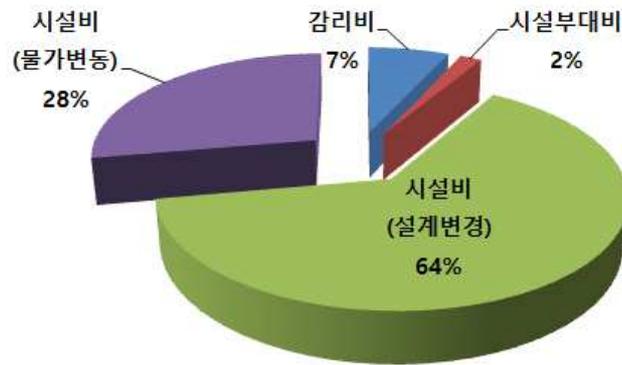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 (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6,460,783 | (x-) 5,238,000 | (x-) 1,222,783 | |
| 시설비 | (x-) 5,924,238 | (x-) 4,807,000 | (x-) 1,117,238 | ◦1,2회 물가변동액 미계상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발생으로 증가 817,238천원(건축)+129,886천원(기계) +170,114천원(전기, 통신) =1,117,238천원 |

9)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

| | | | | |
|-------|-----------------|-----------------|----------------|-----------------------------|
| 감리비 | (x-) 514,545 | (x-) 431,000 | (x-) 83,545 | ◦1차 용역기간 연장 금액 =83,545천원 |
| 시설부대비 | (x-) 22,000 | (x-) 0 | (x-) 22,000 | ◦본인증(녹색,BF)수수료 =22,000천원 |

- 증가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시설비 11억 17백만원,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8천 4백만원, 녹색건축물 인증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2천 2백만원 증액으로,



[그림] 증추경 편성 구성비

- 전체 증액분(12억 28백만원)의 64%를 차지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7억 77백만원)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내 키즈카페, 청소년 독서실 등 주민편의시설과, 숙직실, 관리단속원실, 다목적실 등 업무동을 설계변경함에 따라 용도 및 면적의 변경으로 건축, 기계, 전기·통신시설의 물량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임.

【(남부도로사업소) 설계변경 주요내용】

◦주민편의시설 변경

- ▶ 2층 키즈카페, 커뮤니티 공간

- ☞ 키즈카페→보건지소로 변경(각종 설비 증설)

- ▶ 청소년 독서실 → 카페형 도서관 변경

- ☞ 남,여 구분 공간 → 개방형 공간 변경

◦남부 업무동 변경

- ▶ 1층 숙직실, 관리단속원실 → 조례개정에 따라 남,여 숙직실 공간으로 구성(관리단속원실 3층으로 이동)
- ▶ 3층 다목적실 → 서고, 관리단속원실로 용도에 따른 공간 구획

○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급성은 인정되나 이처럼 공사 막바지에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상당한 부하를 초래하므로 설계과정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나 법적사항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3)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별설명서 p.1433)

○ 동 사업은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33개 소 녹지대) 완충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및 매연 차단하고자 할 목적으로 17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1,780,000 | (x-) 0 | (x-) 1,780,000 | |
|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 (x-) 1,780,000 | (x-) 0 | (x-) 1,780,000 | ◦ 수목 식재 = 1,780,000천원 - 교목 식재 200주 * 440,000원 = 88,000천원 - 관목 식재 48,000주 * 13,000원 = 624,000천원 - 초화류 식재 128,000본 * 4,000원 = 512,000천원 - 부대 비용 1식 * 87,213,000원 = 87,213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식 * 468,787,000원 = 468,787천원 |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푸른도시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열섬효과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계획(공원녹지정책과-2837, ‘19.4.30.)”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33개소의 녹지대에 교목(200주), 관목(48,000주), 초화류(128,000본) 등을 식재하기 위한 예산임.
- 본 사업 취지는 공감대 형성이나, 세부편성내역 중 기본 및 실시시설계비 4억 69백만원이 차년도 식재공사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금년 식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시설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식재의 적정 시기를 고려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음.

4) 한강대교 보수공사(사업별설명서 p.1472)

- 동 사업은 한강대교 유지관리 차원에서 노후되고 손상된 부재를 종합정비하려는 것으로 시급한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2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280,087 | (x-) 0 | (x-) 280,087 | |
| 시설비 | (x-) 280,087 | (x-) 0 | (x-) 280,087 | ○한강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280,087,000원*1식 = 280,087천원 |

- '18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강대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대, 교각, 바닥판 등 주요부재에 발생한 긴급보수대상에 대해 “2019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사업 기 편성예산으로 금년에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 배수시설, 교면포장, 교량받침, 신축이음 등 잔여 보수대상에 대해서는 '20년 보수공사 실시설계 후 '21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는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사업이 '19년에 확정('21.6월 개통예정)됨에 따라
- 보행교 설치 후 한강대교 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보행교 이용시민의 불편 및 안전사고발생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행교 개통 전 앞당겨 한강교량의 종합정비를 완료하려는 것임.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사업 개요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및 주변지역
- 규 모 : 폭10.5m, 연장 약500m
- 사업기간 : '19. 3. ~ '21. 6.
- 총사업비 : 약300억원
- 사업내용 : 한강대교 기존 아치교 교각 활용 연결 보행교 설치
(노량진 북고가차도~한강대교~노들섬 보행육교)
- 추진일정
 - '19. 8. 국제현상설계 심사 및 확정
 - '19. 12. 설계 완료
 - '20. 1.~ '21. 6. 공사시행 및 준공



- 한편,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 사업은 현재 국제현상설계를 공모('19.5.3.~7.2.)한 상태로 8월 중에 설계 심사 및 확정, 12월에는 설계를 완료해 '20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음.
- 따라서 한강대교 보수공사('19.7.~'21.6.)와 보행교설치공사('20.1.~'21.6.)가 병행추진되는 기간('20.1.~'21.6.) 동안 연계된 두 사업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일정조율을 통해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서로간의 간섭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참고로, 2019년 안전총괄실 추진사업 중 “노후 점검시설 개선을 통한 한강대교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당초 한강대교 아치교에 남아있는 한국전쟁의 흔적(탄흔) 등을 관람할 수 탐방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사업과 본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 중단을 위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 전액(1억 77백만원)을 감추경 편성하였는데

- 이처럼 타 실국 추진사업과의 유사성 및 구간 중복 등의 문제로 증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낳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5) 서소문고가 보수공사(사업별설명서 p.1487)

- 동 사업은 '19년 3월 발생한 서소문고가 교각 캔틸레버 하면 콘크리트 박락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 1,200,000 | (x-) 0 | (x-) 1,200,000 | |
| 시설비 | (x-) 1,200,000 | (x-) 0 | (x-) 1,200,000 | 보수공사비 1,200,000,000원 |

-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서소문고가 콘크리트 박락사고는 사고 직후 실시한 외부전문가 및 정밀안전점검업체 합동 현장 점검 결과에서 교량 신축이음장치로부터 유입된 우수가 균열을 통해 침투하여 콘크리트 내 철근부식을 야기함에 따라 철근의 팽창압으로 인해 콘크리트 박락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 및 상시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콘크리트 박락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2008년 서울시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일환으로 서소문고가 외부를 감싸듯 덮어

씩은 알루미늄 외장재로 인해 설치 이후 실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외관조사 및 비파괴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교각과 같은 주요부재들에 발생한 균열 등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 서울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 외장재를 모두 제거하고 긴급 시행중인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보수를 시행하기 위해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급성을 요한다 하겠음.
- 서소문고가차도 경관개선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 역점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2008년 당시 총 공사비 19억 4천만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외장재로 인해 서소문고가차도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난사고 위험성을 수년간 내재되어 왔음은 물론 지금과 같이 긴급한 대규모 보수·보강 예산을 요하는 실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안전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14.5월부터 '15.2월까지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에 외장재로 인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점검/진단의 제약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19년까지 이를 방치한 것은 무사안일주의 행정의 아닐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2008년 이후 서소문고가차도 점검 및 진단 이력

| 기 간 | 시 행 사 | | | 주요 점검 및 진단결과 | 사업비 |
|--------------------------|--------------------------------------|-----------|----------|--|--------|
| | 상태평 가 | 안전성평 가 | 종합평 가 | | |
| 2008. 03. ~ 2008. 06. | 자체점검 | | | · 본 교량에 대한 외관 및 비파괴 시험 결과 보수가 완료된 양호한 상태로 내구성을 저해시키는 손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표등급은 주요 부재 및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를 실시한다면 문제가 없는 A등급으로 판명됨 | 5,832 |
| 정밀점검 | B | | B | · 보수완료 | |
| 2010. 02. ~ 2010. 07. | 뉴타임건설 주식회사 | | | · 본 과업대상 구조물인 서소문고가차도에 대한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교량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 장기적인 공용과정에서 발생된 포장면의 ASP 밀립 및 소성변형발생과 과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하부 누수와 교면수의 하부유입으로 인한 슬래브 콘크리트 열화발생, 하부 누수로 인한 하부 부재 열화 등 일부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내구성 유지측면에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면 교량의 내구성 유지 및 사용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6,577 |
| 자체정밀점검 | B | | B | · 주입보수, 방청처리+단면복구, 표면처리 등 | |
| 2012. 05. ~ 2013. 02. | (주)한국시설 안전연구원 (주)동우기술단 | | | · 서소문고가는 구조적인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가 시행되면 내구성 및 사용성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등급은 『B등급』 으로 평가됨. | 72,188 |
| 정밀안전진단 | B | A | B | · 바닥판 열화부의 치환보수,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주입보수, 신축이음장치 교체, 후타재 보수, 단면파손부 단면복구 공법 | |
| 2014. 05. ~ 2015. 02. | (주)한국건설 품질연구원 (주)한길종합 엔지니어링 | | | · 서소문고가는 노후화된 시설물로서 장주기의 대보수공사보다는 단주기의 지속적인 보수교체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2014년 방수층의 재시공 및 바닥판 보수를 통하여 기능이 회복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내구성 저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정밀한 점검/진단을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경관조형 물로 인하여 계약이 따르고, 보수를 위한 외장재의 해체/복구가 반복적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장재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6,832 |
| 정밀점검 | B | | B | · 단면보수(방청), 주입보수, 표면처리 | |
| 2016. 04. ~ 2016. 11. | (주)해성안전기술원 (주)아워브레인 | | | · 신축이음장치의 후타재 파손 및 하부누수 심화됨. 하부유도배수관 탈락으로 가로보의 파손 및 철근노출, 받침장치 보강판 부식, 교대 및 교각 열화 및 백태를 유발함. · 오랜 공용으로 바닥판의 열화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판 하면 및 거더의 누수백태가 발생하고 있어 재포장시 바닥판 상면에 대한 전체적인 단면복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전반적인 배수구의 막힘 및 파손 등이 발생하여 청소 및 재설치가 필요함. · 국부적인 외장재의 부식 및 파손이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함. | 29,000 |
| 자체정밀점검 | B | | B | · 표면처리, 단면복구, 배수구 청소 및 재설치, 신축이음교체, 외장재 교체 | |
| 2018. 04. ~ 2018. 11. | (주)한국국토안전 연구원 | | | · 본 과업대상 구조물인 서소문고가차도에 대한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교량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 장기적인 공용과정에서 발생된 포장면의 ASP 밀립 및 소성변형발생과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하부 누수와 교면수의 하부 유입으로 인한 슬래브 콘크리트 열화발생, 하부 누수로 인한 하부 부재 열화 등 일부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내구성 유지측면에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면 교량의 내구성 유지 및 사용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8,882 |
| 정밀점검 | B | | B | · 주입보수, 방청처리+단면복구, 표면처리 등 | |